

공정위, 대통령 주요업무보고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:전윤철)는 지난 3월 16일(월)에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였다.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 주요보고 내용 》

- ◆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정된 일정에 따라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추진
- ◆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을 병행 추진
- ◆ '98. 4월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
- ◆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의 개선
- ◆ 허위·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상품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·광고 공정화에관한법을 제정을 추진
- ◆ 개별법에 의거 허용되고 있는 59개 법령, 72개 카르텔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시장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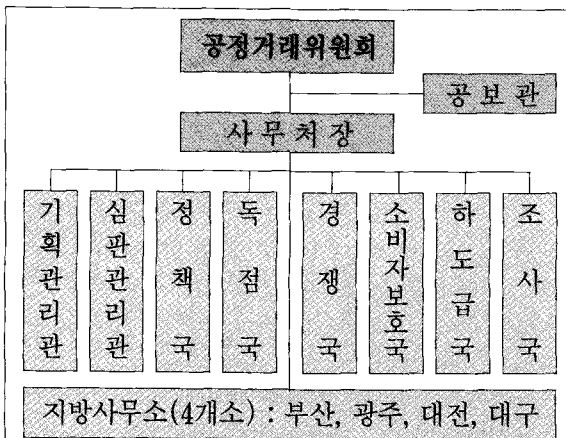
I. 일반현황

1. 조직

-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수립, 법위반사건의 심결을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
-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·운영
 - 공정경쟁질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부산, 광주, 대전, 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를 운영

2. 주요기능

-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,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·시정하는 역할 수행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,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시정
-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부당성을 심사
-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「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」, 「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」, 「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」을 운영



〈연도별 시건처리실적〉

(단위 : 건)

| 연도 | '85 | '90 | '95 | '96 | '97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| | | | |
| 공정거래법 | 418 | 471 | 596 | 826 | 1,217 |
| 하도급법 | 141 | 97 | 453 | 646 | 750 |
| 약관법 | - | 10 | 66 | 78 | 222 |
| 합계 (전년대비 증가율, %) | 559 | 578 | 1,115 (19.9) | 1,550 (39.0) | 2,189 (41.2) |

II. 주요현안과제

1.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시책의 효율적 추진

◆ 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측가능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관련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

가. 채무보증을 기획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해소

- 신규 채무보증은 1998. 4. 1부터 전면 금지하고, 기존 채무보증 33.5조원은 2000. 3. 31까지 완전 해소
 - 자기자본의 100%를 초과한 보증액 6.4조원은 금년 3월말까지 해소
-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개선을 병행 추진
 -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·자산매각 등을 통해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고,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 -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신금액 25.4조원을 초과하는 중복·과다 보증액 15.1조원을 해지토록 유도

-물적담보가 충분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채무보증 되어있는 9.5조원을 해지

-2개 이상의 계열사가 중복 보증하고 있는 경우(2.3조원)에는 1개사 보증만 남기고 해지

- 금융기관이 중복·과다 보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해지 추진

나. M&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

- 외국인의 적대적 M&A 허용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향후 M&A가 크게 증가할 전망
- M&A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

다.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

-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선단식경영의 주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므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,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완전 차단
- '98. 4월부터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
 - '98. 3월중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 요구
 -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또는 업종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실시

2.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쟁정책의 운영강화

- ◆ 독과점시장구조로 인해 담합이나 출고조절 등에 의한 가격 인상이 관행화 되어 경쟁정책차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
- ◆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제도 등을 개선

가.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집중 감시

-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, 12개 소비자단체, 공정거래모니터 요원(200명)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하여 운영중
 - 매월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3월 현재 47개 품목을 선정하여 감시
 - 공정위 본부, 지방사무소와 소비자단체전 국지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번없는 전용전화 “1357번”을 개설
- 감시대상품목이나 신고사건중 가격담합과 출고조절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점조사 실시
 - 의환매매 수수료율을 담합인상한 16개 은행에 과징금 부과('98. 3. 3)
 - 현재 화장지를 포함한 28건의 담합행위 여부와 조제분유등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

나. 「표시·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」 제정

- 새로운 유통기법의 확산, 제품의 다양화·고기술화 등으로 공정한 표시·광고에 의한 상품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
- 허위·과장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상품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('98년 정기 국회 상정 예정)

-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입증토록 하는 광고실증제,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명령제 등을 도입

다. 표준약관 보급 확대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별약관의 시정과 병행하여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
 - '98년중 제2금융권 여신거래, 콘도미니엄 이용분야 등의 표준약관을 승인하여 보급
 - * 현재까지 보급된 표준약관(7개분야) : 아파트 분양, 상가분양, 병원이용, 주차장이용, 은행 여신거래, 은행수신거래, 백화점임대차

3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보완

- ◆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관계를 수평적관계로 전환하여 동반자적 발전 도모
- ◆ 중소기업의 보호·육성을 위한 단체수익계약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운영을 강화
 -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에 대해 전속적 거래관계를 강요하거나 자사 제품을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제재
 -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
-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방법의 개선
 - 원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
 -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

